

의안번호	2219011
의 퇴 인	김예지의원
회 답 일	2026.6.5.
추계번호	26C2669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조제3항 (위원회의 구성)	○ (제3항)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 1.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2.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위원회	재량규정
2	안 제29조 (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)	○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,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 또는 오접종 사례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. 1. 질병관리청장: 다음 각 목에 관한 조사 가. 예방접종의 효과 나.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또는 오접종 2.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: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또는 오접종에 관한 조사	의무규정
3	안 제32조제4항 (예방접종의 실시주관 및 실시기준 등)	○ (제4항)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	의무규정
4	안 제60조제5항 (방역관)	○ (제5항) 제1항에 따라 임명된 방역관은 백신 보관 및 관리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	의무규정
5	안 제60조의3 (한시적 종사명령)	○ (제2항)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이 유입되거나 유행하는 긴급한 경우 제60조의2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기간을 정하여 방역관으로 임명하여 방역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60조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0조제3항(위원회의 구성)	○ 실시 중
2	안 제29조(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)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3	안 제32조제4항(예방접종의 실시주관 및 실시기준 등)	○ 실시 중
4	안 제60조제5항(방역관)	
5	안 제60조의3(한시적 종사명령)	

2. 상세 사유

□ 현행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개정안 일부 조항 관련 사업이 시행 중이고, 개정안에 따라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 상황에서 확대될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을 알 수 없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- 개정안 재정수반요인과 관련된 사업의 예산현황은 다음과 같음
 - (위원회 운영) 현행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9조 및 제10조,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근거해 ‘예방접종 전문위원회’와 ‘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’가 설치·운영 중임
 - (예방접종 종사자 교육 및 운영) 각 지방자치단체 예방접종 업무 담당자들과 위탁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기시행 중임
 - (방역관 및 감염병 관리자 교육) 중앙 및 지자체 감염병관리 고위정책자의 감염병 대응에 요구되는 종합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과정을 기획 및 운영 중임

[표 2] 현행 사업과 재정수반요인 비교

구분	사업내용	'26년 예산(백만원)	재정수반요인
국가예방접종 실시	예방접종 사업지침 인쇄 및 위원회 운영	371	· 안 제10조제3항
	회의 임차료 및 여비, 사업추진비 등	349	
	예방접종 종사자 교육 및 운영	309	
감염병 대응 인력 역량 강화	방역관 및 감염병관리자 교육	191	· 안 제32조제4항 · 안 제60조제5항 · 안 제60조의3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한편, 안 제29조에 따라 예방접종 후 오접종 사례가 발생하여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 - 현행법 제29조(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)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 발생 시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'26년 '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 활동지원' 사업에 100백만원이 편성됨¹⁾
 - 개정안에 따라 기존 이상반응 사례 외 오접종 사례의 경우에도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, 그에 따른 역학조사 횟수 증가 또는 투입되는 역학조사관 증가로 인한 인건비 지출 등으로 추가재정소요 발생이 예상됨²⁾
 - 그러나 현시점에 개정안에서 정의한 오접종 사례 발생 현황과 그에 따른 역학조사 활동지원비 증가 규모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추가재정소요의 추계가 곤란함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(직무대리)
사회비용추계과	이소임	이제정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소임	02-6788-4742	soimlee@assembly.go.kr

- 1) 질병관리청에 따르면, 역학조사관은 17개 시·도에 공중보건의를 1명씩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2026년도에는 인력이 부족하여 울산광역시와 세종시에 필요 인원을 배치하지 못하였으므로 역학조사관에 지급하는 직무수당에 쓰이는 예산 사업(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 활동 지원)에 전년에 비해 7백만원 감소한 100백만원을 편성함(2025년도 역학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381건)
- 2) 안 제2조제18호의2: “오접종”이란 예방접종 과정에서 예방접종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종류·농도·유통기한·보관방법, 접종 대상자, 접종 용량, 접종 방법, 접종 간격, 접종 부위 등 「약사법」 제58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의 첨부 문서에 기재된 사항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예방접종을 말한다.